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안전난간 상부난간대 높이 명확화(안 제13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현행 조문은 안전난간 상부난간대 높이를 “120cm이상”과 “120cm이하”로 구분하여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도록 규정
→ 상부난간대가 120cm인 경우 설치 기준이 겹쳐 현장 혼란 발생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상부난간대 높이를 ‘120cm 이하’에서 ‘120cm 미만 지점’으로 변경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안전난간 설치와 관련한 안전보건 규칙 적용 시 사업장 혼란예방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2. 용접·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 업무 추가(안 제241조의2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제2항에서는 화재감시자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, 화재감시자의 본질적 업무는 규정하지 않음
 - 이로인해 화재·폭발 위험이 높은 용접·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의 화재·폭발사고 예방 역할 및 효과가 미흡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용접·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의 업무에 본질적 업무인 '불꽃·불티 비산 여부 확인 및 화재 발생 여부 감시 업무'를 추가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화재감시자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통한 화재·폭발 사고 예방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3.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 파열판 설치 의무 합리화(안 제262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경우 누출에 대비한 처리설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파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로 작용

나. 제·개정 내용

- ‘안전밸브를 설치하고, 그 후단에 배출물질 처리설비 설치’하여 안전 밸브 작동 시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파열판 우선 설치 대상에서 제외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파열판 설치 요건을 합리화하여 화재·폭발 및 급성 독성물질 누출 예방 조치 실효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4. 화학(부속)설비 사용 전 점검사항 명확화(안 제277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이 개정('20.1.16.)으로 화학설비 등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사용 전 점검 사항을 안전보건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기 전 이와 관계된 안전장치 등의 기능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점검사항을 명확히 규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화학(부속)설비 시 운전 등에서의 화재·폭발 및 누출 사고 예방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5. 인화성 가스 측정 지하작업장 대상 구체화(안 제296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현행 규정은 작업 시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대상 지하작업장을 “인화성 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”로 포괄적 규정하여,
 - 오·폐수, 분뇨 등이 있는 지하작업장은 메탄 등 인화성 가스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포함되는지 해석상 혼란 발생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인화성 물질 저장·취급하는 설비가 있거나 오수·폐수·분뇨 등에 의한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은 인화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오·폐수, 분뇨 등이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 시 메탄 등 인화성 가스에 의한 화재·폭발사고 예방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6. 급성 독성물질 감지·경보설비 설치 요건 정비(안 제299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현행 조문은 ‘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’ 감지·경보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여, 누출된 이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장 오인 소지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급성 독성물질 감지·경보설비 설치 요건을 “외부로 누출된 경우”에서 “외부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”으로 개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입법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해석 혼선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7.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안전조치 개정(안 제335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터널 내 배근 되어 있는 철근과 충돌하여 붕괴되는 사고 발생,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정비 필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 조정 시 위험요인을 ‘現 주변의 전선 등’ → ‘改 감전, 전도, 붕괴 등’으로 명확히 정함
- 적절한 조치의 예시로서 “콘크리트타설장비와 주변 시설의 적절한 간격을 유지” 규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위험요인을 명확화하여 유사 사고 예방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8. 벌목작업 시 안전조치 추가(안 제405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임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벌목작업의 주요 사고 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 의무를 추가할 필요

* 현재 「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(고용노동부 고시)」에 규정된 추구작업 및 조재작업 시 구름 방지 조치를 「안전보건규칙」으로 상향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①수구 절단부보다 벌목하려는 나무 지름의 10분의 1 이상 높은 위치에 추구 작업 실시, ②경사지에서 조재 작업을 하는 경우 말뚝 등으로 목재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규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벌목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부과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9. 한파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(안 제558조, 제563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'24.10.22. 한파를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화하고, 사업주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
 - 이에 산안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한파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조치 사항을 규정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“한파”를 근로자에게 저체온증·동상·동창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정의
- 근로자가 한파 노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* 규정
 - *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,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것과, 보온 기능이 있는 의류, 장갑 등을 착용토록 지도,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고, 작업시간대를 조정,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된 경우 등에는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한파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동자 한랭 질환 예방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10. 조문 정비(안 제341조, 제377조, 제548조, 별표4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건설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, 인용된 법률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굴착공사 및 잠함 작업 시 용어 정비(“건설물” → “건축물등”)
- 교량 작업 관련 용어 통일(“가설 철구조물” → “가설구조물”)
- 잠수신호기 게양 인용 법률 수정(“해사안전법” → “해상교통안전법”)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입법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해석 혼선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